

부산고등법원 2014. 10. 28 선고 2014나3139 판결 [임차권확인]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14. 10. 28 선고 2014나3139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4. 24 선고 2013가합1791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C

변론종결 2014. 8. 26.

판결 선고 2014. 10. 28.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4. 24. 선고 2013가합1791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 대하여 44,600,000원, 선정자 B에 대하여

1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 이하의 각 "원고 A"을
"원고(선정당사자)"로, 제10행 이하의 각 "원고 B"를 "선정자"로, 제2면 제19행의 "2013. 7. 19."을
"2011. 7. 19."로, 제3면 제2행의 "원고들의"를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이하 이들을
"원고들"이라 한다)의"로, 제4면 제1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중훈

판사이재욱

판사박재억

별지